

# 수강신청

## □ 수강신청 기본원칙

- 학생은 매 학기 18학점이내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되,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.75이상인 경우 3학점까지 추가 가능
  - ※ 토목공학과 2019입학생부터 21학점, 졸업학점이 130학점을 초과하는 학과는 21학점, 치의예과는 20학점, 치의학과는 23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
-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음
- 직전학기 수강가능학점을 미달하여 수강한 경우 미달한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다음 학기로 이월됨(3.75이상 학점으로 가산되었거나 이월 된 학점의 재이월은 불가)
  - ※ 직전학기 **학사경고자 및 규정학기 초과자**는 이월 불가

## □ 재이수

- 재이수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은 재이수 신청학기의 성적으로 인정되고, 이전에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무효 처리됨
- 2015학년도 입학생(편입생 포함)부터는 성적등급이 C+이하인 경우에만 재이수를 할 수 있으며, 재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<sup>0</sup>
- 2018학년도 입학생(편입생 포함)부터 재이수는 과목당 2회만 가능(필수 교과목은 제외)
- 동일 교과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폐지된 교과목의 재이수는 교과목 개설학과에서 유사대체과목을 지정받아 재이수 가능
- 계절수업의 수강학점은 매 계절 수업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
  - ※ 휴학생 : 방송·통신수업(OCU, 이러닝), 융합교과목을 제외한 현장수업 교과목 수강 가능

## □ 수강신청 변경

- 수강신청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 다만, 지정된 기일 내 수강신청을 못한 자(복학생 포함)와 수강신청 강좌의 합반, 폐반, 분반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변경할 수 있음
- 수강신청이 승인된 교과목을 출석하지 않을 경우, 그 교과목의 성적 등급은 “F” 임

## □ 수강신청 취소

- 수강과목의 취소는 인트라넷에서 본인이 직접할 수 있음

- 수강신청 취소는 수업일수 1/4선 이내로 함(학사일정표 참조)

## □ 폐강

- 교양(교직, 일선)과목은 수강인원이 25명 미만일 때는 폐강함(원주캠퍼스는 20명 미만)
- 전공과목은 수강인원이 12명 미만일 때에는 폐강함(다만 해당학년 재학생이 30명 미만인 학과는 수강 신청인원이 재학생의 3분의 1미만일 때 폐강. 음악,조형예술·디자인학과 전공실기와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과교육영역은 제외)
- 계절수업 개설과목은 **등록인원 20명 미만일 때 폐강함**

## □ 휴·결강과 보강

- 학사력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교과목 담당 교수의 사정에 의한 결강시 단과대학장에게 『휴·결강 및 보강 계획서』를 사전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, 당해 학기에 반드시 보강하여야 함
- 대학장은 『휴·결강 및 보강 계획서』에 의한 보강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

## □ 수강신청 안내사항

- 재학생 수강신청 가능학점
  - ① 졸업학점 130 학과
    - 2014년전(前) 입학생: 20학점 수강가능
    - 2014년도 이후(以後) 입학생: 18학점 수강가능
  - ② 졸업학점 130초과 학과: 21학점 수강가능(토목공학과 2019입학생 포함)
    - ※ 치의예과 20학점, 치의학과 23학점 수강가능

# 학업 성적 관리

## □ 출석

-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학기 강의가 종료되면 출석사항을 정리하여 기한내 입력을 완료하여야 함. 전자출결 미시행 교과목은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
- 출석이 매 학기 총 수업시간수의 3/4에 미달한 교과목의 성적은 “F”학점으로 처리함
- 부정출석자(의뢰자와 대리자 모두)는 해당교과목을 “F”학점으로 처리함

## □ 공결

- 공결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이 공결허가서 또는 공적 증빙서류를 교부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. 다만, (8)은 공결허가서만 인정한다.
  - (1) 병역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소집 된 학생
  - (2)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학생
  - (3) 정규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학생(교육실습, 현장실습, 야외답사)
  - (4) 경조사로 인하여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(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따름)
  - (5) 출산으로 인하여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으로 본인 21일, 배우자 5일로 하며 공결일은 휴일을 포함한다.
  - (6) 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
  - (7) 본인의 질병으로 응급 진료 및 입원 진료로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
  - (8)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학장이 인정할 때
    - 가. 전공 관련 자격시험, 대학원 진학시험, 취업면접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
    - 나. 일반 병원 진료로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. 단, 진료 받는데 소요된 시간에 한하며, 공결로 인정할 경우 담당교수는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할 수 있다.
    - 다.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
- 취업으로 인한 공결처리는 7학기 이상 이수 후 졸업 잔여 학점이 16학점 이하인 학생이 “공결허가서”(학과사무실-단과대학지원실)를 교부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공결자는 학사력의 종강일에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.
-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학생(이하 “체육특기자”라 한다)은 학기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결을 허가할 수 있다.
- 체육특기자의 공결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# □ 시험

- 시험은 기말시험, 중간시험, 수시시험으로 구분한다.
- 기말시험은 각 교과목의 총 수업시간수 3/4이상 출석한 학생만이 응시할 수 있다.
- 기말시험의 시험시간표는 강의시간에 준하여 편성하되, 교양 및 교직과목은 교무처에서, 전공과정(계열기초과목 포함)의 교과목은 해당 대학에서 편성하여 시험개시 1주일 전에 공고한다.
- 추가시험은 질병, 병역소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이 증빙서를 첨부한 “추가시험신청원”을 제출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.
  -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
  - 병역소집의 경우 소집영장 사본
  -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는 그 사유를 밝힐 수 있는 증빙서
- ※ 추가시험은 시험 종료 후 1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함
- 시험관리
  - 시험 중 부정행위가 있을 때 시험감독자는 교무처장에게 동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
  -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의 해당교과목 성적은 “F”학점으로 처리함
  - 대리시험 행위(의뢰자 및 응시자 포함) 학생은 당해 학기 성적을 모두 “F”학점으로 처리함

## □ 성적평가 기준

- 성적평가는 매 학기별로 각 교과목을 시험, 과제물 및 출석, 학습태도 등을 포함한 성적평가기준을 확장형 수업계획서에 표기함

## □ 평점평균 산출

- 성적평점평균의 산출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를 절사하여 처리함
- 성적 평점평균이 동점일 경우 평점합계 → 신청학점계 → 성적취득과목수 순으로 순위를 정함
- 평점평균의 실점 계산법
  - 【2015학번이전】
    - 일반학생 : (평점×10) + 54
    - 교직이수학생 : (평점×10) + 52.5
    - 평점 4.3 ⇨ 98점, 평점 4.4 ⇨ 99점, 평점 4.5 ⇨ 100점
  - 【2016학번이후】 {(취득한 평점평균-0.6)×40/3.9}+60
-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학기의 평점평균에 산입하지 않음

## □ 성적정정

-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. 다만, 성적의 착오,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은 다음 학기 개시 전까지, 졸업예정자는 졸업사정 전까지 교과목 담당교수의 정정사유서 및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
- 총장은 성적정정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정정을 승인함
- 성적이 D<sup>0</sup>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, F는 낙제로 함
  - ※ 일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으로 부여된 경우 취소됨

## □ 학사경고

- 한 학기성적 평점평균이 1.75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 경고를 함(단, 치의학과 제외)
  - ※ 학사경고 사실은 우편으로 별도 통보 됨
- 학사경고 학생의 수강신청 제한 및 제적
  - 수강신청 제한  
연속 2회 학사경고 학생은 15학점이하, 연속 3회 학사경고자는 12학점이하로 수강신청학점 제한(2018학번부터 적용, 학사운영규정 제70조)
  - 제적  
연속 4회 또는 합산 5회 학사경고시 제적(졸업학기는 미포함, 2018학번부터 적용, 학칙 제53조)

## □ 학년별 수료학점

| 졸업학점 및 수료학점 | 130학점인 학과(부) | 135~144 학점인 학과(부) | 치의예과 (75학점) | 치의학과 (159학점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제1학년        | 32           | 36                | 38          | 39           |
| 제2학년        | 64           | 72                | 75          | 81           |
| 제3학년        | 96           | 108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119          |
| 제4학년        | 130          | 140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159          |